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피델리티 아세안증권 자 투자신탁(주식)

나.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.관리기간: 11.11.26~12.11.25

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HSBC 은행/SC 제일은행/ SK 증권/
골든브릿지투자증권/동부증권
동양증권/미래에셋증권/신영증권/
신한금융투자/ 외환은행/ 우리은행/
우리투자증권/ 제주은행/ 하나대투증권/
한국씨티은행/ 한화증권/ 대신증권/
이트레이드증권/ 경남은행/ 메릴린치증권/
메트라이프생명보험/ 하나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2.07.06	수익증권 명칭	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 재간접형)
	종류형 추가	-	종류 A-e 종류 C-w
	환매방법 단서조항 추가	-	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매 청구한

			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
	신탁보수	운용사: 연 0.80% 사무관리사 보수율:최고 연 0.028%	운용사: 연 0.10% 사무관리사 보수율: 최고 연 0.025%
12.04.12	판매수수료	선취수수료: 1.5%이내	선취수수료: 1.2%이내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2012.07.02

<의안>피델리티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의 주된투자대상의 변경 - 운용 및 관리의
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의
피델리티 아세안증권모투자신탁(주식)의
주된 투자대상을 기존 해외주식에서
역외펀드인 Fidelity Funds-ASEAN Fund
로 변경하고, 펀드유형도 주식형에서 주식-
재간접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
집합투자계약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. 또한
이러한 변경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될
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대상
자산에 대한 한도 및 제한에 대한 적용을
규약 변경 시행일로부터 1 월간 유예하도록
하겠습니다.

변경전:피델리티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변경후:피델리티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(주식
-재간접형)

-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될
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증권 좌수(서면에
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) 33,818,355 좌로서,
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
14,507,579,170 좌의 과반수에 미달하여,

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로써
수익자 총회 성립되었습니다.

-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
좌수(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)
33,818,355 좌 중
100%인 33,818,355 좌수의 찬성으로
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.

2012.06.19

- 발행된 수익증권 총 14,507,579,170 좌
중 수익자총회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
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참석한 수익증권이
13,876,702 좌로서, 법령에 따른
의사정족수(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)
불충족으로 인하여 수익자총회가 불성립
되었습니다.

-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7 항에 따라
“연기수익자총회”가 2 주 이내에
소집되어야 하며, 본 수익자총회의
연기수익자총회 개최는 2012 년 7 월
2 일(월)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 |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|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
부합하는지의 여부 | 부합
- 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| 적정
- 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| 해당없음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| 공정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
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| 적정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
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
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
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
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
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|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
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
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